

2019년 최저임금 관련 사례 예시

사례1

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A 노동자



1주 40시간 근무,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지급

2018년

기본급 157.4만원

(일자리 안정자금 **13만원**)

* 일자리 안정자금 고려 시 전년대비 9.2만원 추가부담

2019년

기본급 174.5만원

(17.1만원, 10.9%인상)

(일자리 안정자금 **15만원**)

* 일자리 안정자금 고려 시 전년대비 2.1만원 추가 부담

* 사회보험료 부담의 경우는 두루누리사업(고용보험, 국민연금의 90% 지원)과 건강보험료 감면(60%경감) 세액공제 효과로 실제로는 월 16,930원만 부담(산재보험 제외)

사례2

중소기업(100인 규모)에서 근무하는 B 노동자



1주 40시간 근무,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식비·교통비 지급

월급 구성: 기본급(최저임금 수준) + 식비·교통비(매월 30만원)

2018년

월급 187.4만원 중
최저임금 산입임금

기본급 157.4만원

2019년

월급 192만원(4.6만원 인상) 중 최저임금
산입임금 = **179.8만원**:

기본급 162만원 + 식비·교통비 17.8만원

* 식비·교통비 산입으로 4.6만원 추가부담

사례3

중소기업(300인 규모)에서 근무하는 연봉 3,600만원 받는 C 노동자



1주 40시간 근무, 주휴일 8시간만 부여

연봉(3,600만원, 월300만원) 구성: 기본급 160만원(53%),
상여금 월75만원(25%), 복리후생비 월20만원(7%), 초과근로수당 45만원(15%)

2018년

월급 300만원 중
최저임금 산입임금

기본급 160만원

2019년

월급 300만원 중
최저임금 산입임금 = **199.2만원:**
기본급 160만원 + 상여금 31.4만원 +
복리후생비 7.8만원

* 상여금, 복리후생비 산입으로, **추가인상 없어도 최저임금 위반 아님**

→ 최저임금 자체로 인한 인상효과는 없음

사례4

대기업(1,000인 규모)에서 근무하는 연봉 5,300만원 받는 D 노동자



1주 40 근무, 주휴일 8시간, 약정휴일 8시간

연봉(5,300만원) 구성: 기본급 170만원(38%), 상여금 120만원(27%),
복리후생비 30만원(7%), 초과근로수당 55만원(12%), 성과금(연말) 연800만원(15%)

2018년

월 441.7만원 중
최저임금 산입임금

기본급 170만원

2019년

월 441.7만원 중 최저임금 산입임금
최저임금 산입임금 = **264.2만원:**
기본급 170만원 + 상여금 76.4만원 +
복리후생비 17.8만원

* 상여금, 복리후생비 산입으로, **추가인상 없어도 최저임금 위반 아님**

→ 최저임금 자체로 인한 인상효과는 없음